

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12.(수) 조간 / (인터넷 보도) 2022. 10. 11.(화) 12:00		
담당 부서	소방청	책임자	과장 권혁민 (044-205-7440)
	화재예방총괄과	담당자	소방경 전준희 (044-205-7442)

오는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

- 건물 규모 큰 특급·1급·건설현장 대상물의 전문적 소방 관리 목적

주요 내용

※ '22. 12. 1.부터 시행

- ① 타(他) 분야 안전관리자, 특급·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
- ②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
- ③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리업자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도 실무교육 이수

[기타]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연면적 20만㎡ 기준을 10만㎡로 조정, 관리 대상 확대

□ 소방청(청장 이홍교)은 오는 12월 1일부터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을 앞두고,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·1급·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.

○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,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.

□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△타(他)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△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△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.

- 현재는 타(他) 분야(전기·가스·위험물 등)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, 앞으로는 큰 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전담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.
- 또한,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*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·대수선을 하는 경우,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.

<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>

-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
 1.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것
 2.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것으로서
 - 가. 지하 2층 이하
 - 나. 지상 11층 이상
 - 다.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 냉동·냉장창고

-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(이하 “관리업자”)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,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<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신설 >

교육과정	교육기간	교육기관
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	3일(24h)	한국소방안전원
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	2일(16h)	"

□ 이 밖에도,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㎡을 연면적 10만㎡ 이상으로 조정,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.

<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>

<2022년 10월 기준>

구분	일반대상물(아파트 제외)	아파트
특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층 이상 • 120m 이상 • 연면적 20만㎡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50층 이상 • 200m 이상
1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1층 이상 • 연면적 1만5천㎡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0층 이상 • 120m 이상
2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프링클러설비, 옥내소화전설비등 설치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프링클러설비, 옥내소화전설비등 설치대상
3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

□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“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.” 며, “앞으로도 대형화·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.” 고 말했다.



참고

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관련 내용

□제24조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“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이라 한다)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다른 안전관리자(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·가스·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제29조(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) ①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“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”이라 한다)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(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)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
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
3.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,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
4.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
5. 초기대응체계의 구성·운영 및 교육
6. 화기취급의 감독,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
7.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

③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” 또는 “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”은 “공사시공자”로 본다.